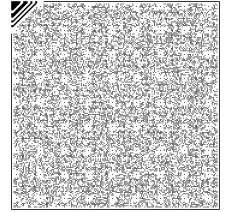




고용노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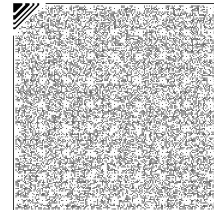


수신 기업기준 50인 이상 화학·폐기물처리업 사업장 대표 귀하
(경유)

제목 사업장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위험요인 점검·개선 요청

1. 귀 사업장의 산재예방 노력에 감사드리며,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관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함)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및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3. 위 관련으로 올해 1.27.부터 근로자 수 50인 이상의 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예산·조직 등의 편성, 위험요인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개선 등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 그러나, 위험물을 제조·취급하는 화학업종, 폐기물 처리업 등의 업종에서 관리감독자 등 안전관리체계 구성·운영 미흡 및 위험물을 제거하지 않은 채 화기작업을 실시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에 의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 3.29(화) 안산, 액상폐기물 저장탱크 상부에서 용접작업 중 폭발(사망 2명)
4.06(수) 천안, 정제유탱크 상부에서 통기관 호스 연결 중 폭발(사망 1, 부상 1)
6.11(토) 평택, 슬러지 저류조 상부 배관 유지보수를 위한 용접작업 중 폭발(사망 1)
4. 따라서, 귀 사업장에서는 올 하반기에도 신속히 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경영책임자(CEO)에게 필히 보고하여 현장에서 법이 철저히 준수 되는데 필요한 개선필요사항(시설개선, 안전조직 보강, 예산 투입, 작업절차및 매뉴얼 마련·준수, 교육 실시 등)에 대한 이행을 요청드립니다.
 5.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불시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장이 신속한 점검 및 개선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정조치할 예정이오니,
 -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본사(CEO) 차원에서 수시로 점검·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체점검 양식 1부. 끝.



고용노동부장관



시설주사

임준환

공업사무관

교육

화학사고예방 전결 2022. 7. 20.

과장

심우섭

협조자

시행 화학사고예방과-2182 (2022. 7. 20.)

접수

우 30148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산업안전보건본부 4층 화학사고예방과 / www.moel.go.kr

전화번호 044-202-8967 팩스번호 044-202-8094 / creml@moel.go.kr / 비공개(6,7)